

의안번호	2202270
의 퇴 인	정점식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계번호	24C33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16억원(연평균 103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노인 내항 여객운송 및 도선 운임 지원 (안 제26조)	100	101	103	105	107	516	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경로우대)	○	○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와 관련 재정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의 수송실적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므로 본 추계서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에 한정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사업¹⁾을 통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의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의 경우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 7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²⁾
- 추가재정소요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연도별 65세 이상의 내항 여객운송 및 도선 이용자 수에 지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되, 기존 사업 대상자(7개 시·도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제외

1)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에 근거

2) 8,340원 초과 3만원 이하 운임에 대하여는 자부담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운임에 대해서는 자부담 6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5만원 초과 운임에 대해서는 자부담 7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65세 이상 이용자 수)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의 주민 유형별 연안여객선 수송인원 수에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상의 시도별·대상자별 대중교통이용자 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
 - (❶ 전체 연안여객선 수송인원 수)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의 2023년 연안여객선 수송인원 수를 기준으로 2019~2023년 해당 수치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14,585,137	10,602,840	11,464,345	13,991,454	13,268,392	-2.3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❷ 주민 유형별 수송인원 수)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의 2023년 기준 전체 수송인원 대비 일반·도서민 수송인원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2023년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일반	도서민
2023년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13,268,392 (100.0)	9,991,415 ㉠ (75.3)	3,276,977 ㉡ (24.7)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❸ 시도별·대상자별* 수송인원 수)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상의 시도별·대상자별 대중교통이용자 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
 - * 경로·국가유공자·어린이·외국인·일반인·장애인·청소년 등으로 구분된 대상자 중 “경로” 유형이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표 4] 대중교통 이용량 지표(2023년)

(단위: 통행, %)

구 분	합 계	경로	도서민 대상 기 지원 지역	미 지원 지역
대중교통 이용량	6,024,289,250 (100.0)	710,271,741 ㉢ (11.2)	217,545,864 (3.4)	492,725,877 ㉣ (7.7)

주: 1. 목적통행량(최초 승차에서 최종 하차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1회로 보는 이용량)의 발생량 기준

2. 기 지원 지역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가리킴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카드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④ 최종 지원 대상자 수) 기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의 도서민을 제외하여 산출(7개 지역의 일반인은 포함)

$$\begin{aligned} * \text{연도별 산출식} &= (\text{전체 연안여객선 수송인원 수} \times \text{㉔ 일반주민 비중} \times \text{㉔ "경로" 비중}) \\ &+ (\text{전체 연안여객선 수송인원 수} \times \text{㉔ 도서민 비중} \times \text{㉔ 미 지원 지역의 "경로" 비중}) \end{aligned}$$

- (지원 단가) 지원 단가는 현행 해양수산부의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사업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의 2023년 결산 기준 평균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2021~2023년 해당 수치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
- 해양수산부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

[표 5]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운임보조(여객운임지원) 사업 지원 단가

(단위: 원, %)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평균 여객운임지원 단가 (결산 기준)	6,510	6,534	7,054	4.1

자료: 해양수산부 각 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16억원(연평균 103억원)으로 추계됨

[표 6] 노인 내항 여객운송 및 도선 운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일반지역 노인 이용자 수	1,063,848	1,038,978	1,014,690	990,970	967,804	-	-
도서민 노인 이용자 수 (기 지원 지역 제외)	242,051	236,393	230,866	225,469	220,199	-	-
지원자 수(명)(A)	1,305,899	1,275,371	1,245,556	1,216,439	1,188,003	-	-
지원 단가(원)(B)	7,644	7,957	8,283	8,622	8,975	-	-
추가재정소요(억원) (A×B)	100	101	103	105	107	516	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